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이하 “JST 공유대학”이라 한다) 현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공유대학 조직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JST 공유대학은 대학교육혁신으로 고급연구인재, 융합실무인재, 현장전문인재 및 사회창의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전북지역사회의 발전 및 번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2 장 JST 공유대학 조직

제 1 절 JST 공유대학의 장

제3조(대학교육혁신본부장) ①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JST 공유대학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 JST 공유대학을 대표한다.

② 본부장은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임명한다.

③ 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교육혁신본부본부장(이하 “부분부장”이라 한다)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대학교육혁신부분부장) ① 부분부장은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임명한다.

② 부분부장은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에 따라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의 명을 받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할 수 있다.

제 2 절 JST 공유대학 교육조직

제5조(대학 및 대학원 등) ① 전북지역혁신플랫폼(이하 “RIS”이라 한다)에 융복합 단과대학으로 JST 공유대학을 둔다.

② 대학교육혁신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RIS 총괄대학교의 본부직속으로 두어 운영한다.

③ JST 공유대학은 RIS 각 핵심분야별 즉, 미래수송기기학부, 에너지신산업학부, 농생명·바이오학부를 두며, 각 학부에는 다음과 같이 전공(학과)들을 둔다.

1. 미래수송기기: 친환경미래모빌리티, 스마트모빌리티SW, 특수목적수송기기

2. 에너지신산업: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3. 농생명·바이오: 디지털농업, 푸드테크, 메디컬·바이오

④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의 핵심분야별 융복합대학원으로 대학원을 둔다.

⑤ 각 대학원의 규정, 대학원학위수여규정, 학·석사연계과정 및 대학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생의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대학원, 대학 학부 또는 전공의 모집 정원) 각 학부(전공)에 설치하는 과정별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

표 1]과 같고, 모집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의 핵심분야별로 20명씩 총 융복합대학원 60명을 모집한다.

2.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의 핵심분야별로 90명씩 총 270명을 각 분야 전공별 30명씩 3-4학년 전공심화과정 학생을 모집하되, 지원하는 학생의 수가 많을 경우 대학교육혁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모집 정원을 확대할 수 있다.

3. 전북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공별 대학 학부 및 대학원 정원은 변경할 수 있다.

4.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의 핵심분야별로 20명씩 총 60명을 전문대학 혹은 일반대학 비이공계 학생으로 1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를 기초전공 학생으로 모집한다.

제6조의2(재직자, 특성화고, 일반시민 등) 모집 단위가 아닌 비교과 첨단교육 과정 운영으로 JST 공유대학 1-2학년 공통교양과정을 둔다. 다만, 공통교양과정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본부장 및 부분부장 등) 제1절에 의한 본부장 및 부분부장은 JST 공유대학 및 대학원 교무를 통할 및 감독하며, 학생의 교육·지도 및 교육과정들을 운영 담당한다.

제8조(핵심분야별 사업단장 등)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의 핵심분야별 사업단장은 JST 공유대학 학부 또는 전공별 이수과목 및 교육과정들을 관리 및 감독한다.

제 3 절 행정조직

제9조(실·팀의 설치) JST 공유대학을 총괄하는 본부에 교육혁신실과 행정지원실 등을 둔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본부에 대학교육혁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두어 JST 공유대학의 혁신교육을 유도하며, 각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에 따른다.

제 4 절 JST 공유대학 교육기본시설

제11조(교육기본시설) JST 공유대학의 교육기본시설로 원격화상강의 가능한 스마트강의실, 원격화상강의 가능한 스튜디오, On-Off 하이브리드 학습공간, 최첨단 인프라 실험실습공간 등을 둔다.

제11조의2(핵심분야별 사업단) ① 전북대 내에 JST 공유대학 원격화상강의 가능한 스마트강의실, 원격화상강의 가능한 스튜디오, On-Off 하이브리드 학습공간 및 미래수송기기 최첨단 인프라 실험실습공간 등을 둔다.

② 군산대 내에 JST 공유대학 원격화상강의 가능한 스마트강의실, 원격화상강의 가능한 스튜디오, On-Off 하이브리드 학습공간 및 에너지신산업 최첨단 인프라 실험실습공간 등을 둔다.

③ 원광대 내에 JST 공유대학 원격화상강의 가능한 스마트강의실, 원격화상강의 가능한 스튜디오, On-Off 하이브리드 학습공간 및 농생명·바이오 최첨단 인프라 실험실습공간 등을 둔다.

제11조의3(참여대학) ① 학생 참여도에 따라 참여대학 내에 JST 공유대학 원격화상강의 가능한 스마트강의실, 원격화상강의 가능한 스튜디오 및 On-Off 하이브리드 학습공간 등을 둔다.

제12조(공동캠퍼스 등) ① 전북산학융합원에 JST 공유대학 최첨단 인프라 공동실험 실습공간 및 학생과 산업체 공동협업 첨단 스마트 공간 등을 둔다.

제 3 장 JST 공유대학 참여교수 등

제 1 절 JST 공유대학 참여교수

제13조(참여교수) ① JST 공유대학 참여교수는 전북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전북지역의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로서 JST 공유대학에서 3학점 이상 강의하는 교수로 정한다.

② JST 참여교수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주당 3시간 이상으로 하고, JST 공유대학에서 수행하는 강의시수는 참여교수의 소속대학에서 법정 강의시수로 인정한다. 단, 강의시수 상한선 등에 관해서는 소속 참여 대학 규정 등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담당교과목 교수 및 이와 연계되는 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의 임용·재임용은 각 핵심분야별 사업단장 및 그 구성원들의 추천으로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절 JST 공유대학 초빙교수

제14조(초빙교수) ① JST 공유대학에 초빙교수를 둘 수 있으며, 초빙교수의 추대절차,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부에서 따로 정한다.

② JST 공유대학의 핵심분야 초빙교수는 전북지역 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핵심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각 핵심분야별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③ JST 공유대학의 공통교양 및 비교과 초빙교수는 전북지역 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본부장의 추천으로 정한다.

제 3 절 대학교육혁신위원회

제15조(설치 등) ① JST 공유대학 중·장기 교육혁신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전북지역 대학발전에 관련된 정책기획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본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학교육혁신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한다.

③ 대학교육혁신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JST 공유대학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JST 공유대학 참여교수 및 초빙교수에 관한 사항
3. JST 공유대학 선발(재입학 포함) 또는 수료에 관한 사항
4. JST 공유대학 중간 및 기말시험에 관한 사항
5. JST 공유대학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JST 공유대학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부장 또는 사업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 절 자체평가위원회

제16조(설치 등) ① JST 공유대학 운영/추진실적 및 우수성과 등의 평가를 통한 공유대학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 5 절 실무위원회

제17조(설치 등) ① JST 공유대학 융합전공과목, 공통교양과목 등의 혁신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 4 장 학사운영

제 1 절 학사운영 일반

제18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JST 공유대학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년은 2학기로 나누되,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 2개 학기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학기의 별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학기의 학년을 2학기로 나누는 경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는 3주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기 개강할 수 있다.

④ 특별학기로 여름학기과 겨울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⑤ 학년, 학기 등의 기타 제반 사항들은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의2(특별학기) ① 기초·교양교육 강화, 선·후수 이수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직자, 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대상의 비교과 특별교육과정 등을 위하여 하계(여름) 또는 동계(겨울) 휴가기간에 특별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학기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JST 공유대학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JST 공유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하되,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하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⑤ 수업일수 등의 기타 제반 사항들은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여름)휴가: 제1학기 수업 종료 후부터 제2학기 수업시작 전까지
2. 동계(겨울)휴가: 제2학기 수업 종료 후부터 익년 2월말까지
3. 국정공휴일

② 휴업일 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휴가 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업을 할 경우에는 즉시 참여대학 총장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수업 연한) ① JST 공유대학의 수업 연한은 3-4학년 전공심화과정의 복수전공, 부전공 및 학생설계 융합전공 과정으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 3-4학년 전공심화과정의 마이크로디그리 과정과

전문대학 및 비이공계 학생들의 2학년 기초전공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년 이내 수료할 수 있다.

② JST 공유대학 등록학생들은 학기당 3과목(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③ 수업 연한 등의 기타 제반 사항들은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재학 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부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 한다.

② 휴학 기간과 시간제학생 등록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④ 재학 연한 등의 기타 제반 사항들은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선발, 지원 및 등록

제23조(선발시기) JST 공유대학 학생 선발 시기는 해당 모집연도 학생 선발 기준(모집요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제24조(지원자격) ① JST 공유대학 3-4학년 전공심화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전형을 거친 자로 한다.

1. 전북지역 일반대학 1-2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② JST 공유대학 2학년 기초전공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전형을 거친 자로 한다.

1. 전북지역 전문대학 1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북지역 일반대학 비이공계 학생으로 1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

제25조(지원절차) ① JST 공유대학 지원자는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북지역 일반대학의 1-2학년 혹은 1학년 학업성적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북지역 전문대학의 1학년 학업성적증명서

3.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6조(선발 방법) ① JST 공유대학 전공심화과정 3-4학년 신입생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 JST 공유대학은 제6조에 정한 정원을 선발하되, 참여대학교 해당연구 분야의 재학생들 수에 따라 참여대학별 차등 분배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전형하되 시일 및 방법 등은 따로 공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평가와 면접고사 및 적성·인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④ 특별전형은 취업자, 특기자,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지역의 우수 인재 등 대학별 독자적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 특수교육대상자 및 농·어촌지역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되, 전형방법과 시일, 지역 우수인재의 지역 범위 및 비율 등은 본부에서 정해 공고한다.

⑤ JST 공유대학 지원자 선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JST 공유대학 **학생선발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본부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허가 및 취소) JST 공유대학 합격은 본부장이 허가한다. 다만,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이를 취소한다.

제28조(등록절차) ① JST 공유대학 합격이 확정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학기 수강신청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이유 없이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9조(수강신청) ① JST 공유대학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의한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장애학생 학점등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는 차후 복학하여 JST 공유대학에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고, 복학생에 관한 사항은 본부에서 따로 정한다.

제 3 절 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제30조(휴학절차) JST 공유대학의 공식적인 휴학 규정은 없으며, 모든 휴학절차는 해당학생 소속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휴학기간) JST 공유대학의 공식적인 휴학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모든 휴학기간은 해당학생 소속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복학) JST 공유대학의 공식적인 복학 규정은 없으며, 모든 복학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생 소속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당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부장이 이를 제적한다. 기타 당연제적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생 소속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1. 소정기한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재학 중 통산하여 3과목 이상 학점이수를 못한 자

제 5 장 교과목의 이수

제 1 절 교과과정

제34조(교과) ① JST 공유대학 교과목은 3-4학년 전공심화과목, 2학년 기초전공과목, 1-2학년 공통교양과목 및 비교과 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JST 공유대학 3-4학년 전공심화과목은 각 전공별 10개 이상 15개 이하 교과목들을 개설한다. 단, 초급 40%, 중급 40% 및 고급 20% 비율로 수준별 교과목들을 개설한다.

③ JST 공유대학 2학년 기초전공과목은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및 농생명·바이오 등 각 핵심분야 별로 6개 이하 교과목들을 개설한다. 단, 각 핵심사업 단장과 구성원들의 동의로 JST 공유대학 2학년 기초전공과목은 전공심화과정의 초급 개설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5조(교양 및 전공이수) ① JST 공유대학 교양과목은 공통교양, AI 기초 및 심화, Cording 기초 및 심화, 디지털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성교육, 직무역량 ESG 등 비교과 과목으로 구성되며, 1-2학년 대학생, 재직자 및 일반인 등이 이수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본부에서 따로 정한다.

② 급변하는 기술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융복합 사고능력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및 학생설계융합전공 등을 들 수 있다.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및 학생설계융합전공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본부에서 따로 정한다.

③ JST 공유대학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대학교 및 학부(전공)·학과 이외의 JST 공유대학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36학점)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전공
2. 부전공: 학생이 소속한 대학교 및 학부(전공)·학과 이외의 JST 공유대학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21학점)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전공
3. 마이크로디그리: 학생이 소속한 대학교 및 학부(전공)·학과 이외의 JST 공유대학 전공과정을 일정 학점 수(12학점)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전공
4. 학생설계융합전공: 학생이 스스로 JST 공유대학 3-4학년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조합·설계하여 일정 학점 수(36학점)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전공

제36조(교과과정) ① 학생의 교과과정과 학수구분별 이수학점 기준은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②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총 졸업학점 등은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③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는 JST 공유대학 복수전공 또는 학생설계융합전공 등을 이수할 수 있으며,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는 JST 공유대학 부전공 또는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이수할 수 있다. 단, 학생의 교과과정 기준은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④ JST 공유대학 교육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자의 학점은 해당학생의 소속 참여대학 규정에 따라 일반선택학점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JST 공유대학 학생은 매 학기당 JST 공유대학 설강 교과목에서 9학점(3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⑥ JST 공유대학 수강성적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자가 4학년 2학기에 수강하는 JST 공유대학 고급 전공심화교과목을 대학원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JST 공유대학 교과목에서 선수, 후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목은 선수, 후수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제37조(복수전공 교육과정 등) ① JST 공유대학 학생들의 학위과정은 전북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소속 참여대학의 인정과 소속 참여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② JST 공유대학 학생들의 학위증은 소속 참여대학의 학위증에 JST 공유대학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및 학생설계융합전공 등을 함께 기록할 수 있다.

제38조(이수단위) JST 공유대학 학생들의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 과목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본부에서 특별히 정하는 과목은 예외로 한다.

제 2 절 수 업

제39조(수업시간표) JST 공유대학 매 학기 수업시간표는 개강 전에 본부에서 작성하여, 본부장 및 참여대학 교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수강신청과 승인) ① JST 공유대학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JST 공유대학 본부에게 수강신청을 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수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JST 공유대학에서 승인된 과목은 본부장의 허가 없이 학기 도중에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41조(수업방식) ① JST 공유대학 수업은 학기 중 주간에 LMS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원격화상 강의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JST 공유대학 교과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시간에 녹화 원격화상 강의 및 Off-line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3 절 시험과 성적

제42조(시험) ① JST 공유대학 시험은 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며, 그 외에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교과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①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학업성과 측정방법이 준비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여 학업성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3조(시험자격) JST 공유대학 매 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자는 기말 시험에 응할 수 없으며, 시험에 응시한다 해도 F처리 한다.

제44조(성적평가) ① JST 공유대학 학업성적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과담당교수의 자율(상대평가나 절대평가 등)로 정한다.

② JST 공유대학 교과목별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 D⁰등급 이상은 급제로 하고 F등급은 낙제로 한다.

등 급	평 점	비고(100점 만점 기준)
A ⁺	4.5	95 ~ 100
A ⁰	4.0	90 ~ 94
B ⁺	3.5	85 ~ 89
B ⁰	3.0	80 ~ 84
C ⁺	2.5	75 ~ 79
C ⁰	2.0	70 ~ 74
D ⁺	1.5	65 ~ 69
D ⁰	1.0	60 ~ 64
F	0	60점 미만

③ 추가시험의 성적은 당해 시험점수의 100분의 90미만으로 한다. 다만, 시험기간 중복 또는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JST 공유대학 매 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되거나 수강 신청한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0점이 된다.

제45조(성적경고) ① JST 공유대학에서 수강한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성적경고를 한다.

② 제1항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 절 이수의 인정

제46조(학점의 인정) ① JST 공유대학에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전북지역혁신플랫폼 참여대학에서 소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JST 공유대학에서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

제47조(학점의 인정시기) JST 공유대학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48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JST 공유대학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기본학점은 9학점 이하로 하되, 직전학기 JST 공유대학에서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는 기본학점 외에 3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계절수업 또는 언어교육원 특별강좌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 상한선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49조(졸업 및 수료학점) ① JST 공유대학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소속 참여대학 규정에 따른다.

② JST 공유대학 학생의 복수전공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JST 공유대학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JST 공유대학 학생의 부전공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JST 공유대학 21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JST 공유대학 학생의 마이크로디그리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JST 공유대학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⑤ JST 공유대학 학생의 학생설계융합전공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JST 공유대학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50조(수료의 취소) 수료생으로 제46조 제2항 JST 공유대학에서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을 때에는 JST 공유대학 수료를 취소할 수 있다.

제 6 장 학 생

제 1 절 학생활동

제51조(학생자치기구) ① JST 공유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탐구와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조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52조(학생지도) 본부장은 JST 공유대학 학생들의 학업 및 학교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53조(금지사항) JST 공유대학 학생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2 절 장학제도

제54조(장학금) JST 공유대학 학생으로서 JST 공유대학 학업성적이 2.75 이상인 자에게는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및 학생설계융합전공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금을 수여한다.

제 3 절 규율과 상벌

제55조(규율 및 상벌) JST 공유대학 학생은 소속 참여대학의 모든 규율 및 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 4 절 장애학생 지원

제56조(장애학생 지원) 본부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원한다.

제 7 장 특종생

제 1 절 재외국민과 외국인 학생

제57조(입학허가 및 교육과정)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JST 공유대학 입학을 원하는 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입학절차 및 교육과정을 따른다.

제 2 절 위탁생

제58조(위탁생 입학허가) ① 전북지역 산업체 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그 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수학능력을 평가한 후, JST 공유대학 정원의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JST 공유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위탁생에게는 JST 공유대학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59조(위탁생의 당연제적) 위탁생이 JST 공유대학 수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제적된다.

제 3 절 재직자 및 고등학생

제60조(재직자) ① JST 공유대학 교육과정에 재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재직자들의 JST 공유대학 허용인원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로 한다.

③ 재직자들의 자격, 선발방법 및 학점신청기준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1조(고등학생) ① JST 공유대학의 특별 프로그램을 고등학생 및 일반 시민들이 수강할 수 있다.

② JST 공유대학의 특별 프로그램 이수증 수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본부에서 따로 정한다.

제 4 절 공개강좌

제62조(목적) JST 공유대학에 직무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의 체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63조(과목, 기간 등)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정원, 수강자격,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본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8 장 자체평가

제64조(자체평가) ① 본부장은 JST 공유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장 규정개정

제65조(규정개정) ① JST 공유대학 규정의 개정은 JST 공유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있거나 교무 수행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본부장이 발의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10일 이상 예고하여 대학교육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JST 공유대학 규정개정은 대학교육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확정·공포하고, 전북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참여대학 교무처장에게 공지한다.

제 10 장 보 칙

제66조(시행규칙) JST 공유대학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본부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2023.10.18. 규정 제2호)

- ① 본 JST 공유대학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부설 학습공간, 스마트강의실 및 첨단실험실습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JST 공유대학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별지서식 1]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20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 학부(과) 복		
수전공/부전공/마이크로디그리/학생설계융합전공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전북 RIS 대학교육혁신본부장 (학위)	(성명)	인
전북 RIS 센터장 (학위)	(성명)	인

[별지서식 2]

제 호		
증 서		
성 명		
20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학 소정의 전 과정과 전북새만금텍(JST) 소정의 전 과정(
전공, 복수전공/부전공/마이크로디그리/학생설계융합전공)을 이수하고		
학사 및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RIS 본부장 (학위) (성명) 직인	RIS 센터장 (학위) (성명)	직인
위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OO 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직인
학위번호 : _____		

[별표 1]

2024학년도 모집단위별 학생 정원표

○ JST 공유대학 : 3-4학년 전공심화과정

학부	모집단위명	모집정원	개설전공
미래수송기기 학부 (90명)	친환경미래모빌리티	30	친환경미래모빌리티 관련 교과목 10개 이상 15개 이하 전공교과목 개설 초급 40%, 중급 40%, 고급 20% 개설
	스마트모빌리티SW	30	스마트모빌리티SW 관련 교과목 10개 이상 15개 이하 전공교과목 개설 초급 40%, 중급 40%, 고급 20% 개설
	특수목적수송기기	30	특수목적수송기기 관련 교과목 10개 이상 15개 이하 전공교과목 개설 초급 40%, 중급 40%, 고급 20% 개설
에너지신산업 학부 (90명)	이차전지	30	이차전지 관련 교과목 10개 이상 15개 이하 전공교과목 개설 초급 40%, 중급 40%, 고급 20% 개설
	수소에너지	30	수소에너지 관련 교과목 10개 이상 15개 이하 전공교과목 개설 초급 40%, 중급 40%, 고급 20% 개설
	재생에너지	30	재생에너지 관련 교과목 10개 이상 15개 이하 전공교과목 개설 초급 40%, 중급 40%, 고급 20% 개설
농생명·바이오 학부 (90명)	디지털농업	30	디지털농업 관련 교과목 10개 이상 15개 이하 전공교과목 개설 초급 40%, 중급 40%, 고급 20% 개설
	푸드테크	30	푸드테크 관련 교과목 10개 이상 15개 이하 전공교과목 개설 초급 40%, 중급 40%, 고급 20% 개설
	메디컬·바이오	30	메디컬·바이오 관련 교과목 10개 이상 15개 이하 전공교과목 개설 초급 40%, 중급 40%, 고급 20% 개설

● 모집정원은 전공 분야별 지원자의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JST 공유대학 : 2학년 기초전공과정

학부	모집단위명	모집정원	개설전공
미래수송기기 학부 (20명)	친환경미래모빌리티	20	미래수송기기 관련 교과목 6개 이상 기초전공교과목 개설 혹은 전공심화과정 “초급” 교과목으로 대체
	스마트모빌리티SW		
	특수목적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학부 (20명)	이차전지	20	에너지신산업 관련 교과목 6개 이상 기초전공교과목 개설 혹은 전공심화과정 “초급” 교과목으로 대체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농생명·바이오 학부 (20명)	디지털농업	20	농생명·바이오 관련 교과목 6개 이상 기초전공교과목 개설 혹은 전공심화과정 “초급” 교과목으로 대체
	푸드테크		
	메디컬·바이오		

● 모집정원은 전공 분야별 지원자의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